

2024년 난민인권센터 토론회

#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권영실

김연주

심아정

이진화

박정형

이현주

문의: [refucenter@gmail.com](mailto:refucenter@gmail.com)

6월 13일(목)

오후 3시

종로낙원상가 4층

낙원홀

최근 법원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주요 집행그룹인 담당공무원 및 통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난센은 이 판결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외국인보호소, 난민면접·심사, 행정 및 생활공간에서 행정권력의 작동양상과 난민들의 삶·권리의 침해, 이에 맞서는 운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1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

- 허위난민면접 국가배상사건 개요(권영실)
-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본 행정권력의 문제(김연주)

## 2부: 난민행정권력의 현황

- 외국인보호소(심아정)
- 취어난민(이진화)
- 일상공간(박정형)
- 접근성: '비문해인'(이현주)

## 허위난민면접 국가배상사건 개요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 1. 국가배상소송 소제기 전 사건 경과

#### 【박해사항】

문.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십시오.

답.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  
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문.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이집트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

답.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문. 이집트에서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

답. 아니오.

문.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고 있나요.

답. 예.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나요?) 예. 잘 살고 있습니다.

문. 이집트 출국 시 어느 공항을 통해 출국했나요.

답. 카이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그 공항에서 출국 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예.

문. 지금까지 주장한 것 외에 다른 난민신청 사유가 있나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문. 지금까지 모두 사실만을 진술하였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 면담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 2016. 6. 난민신청(1일) / 난민면접(14일) / 난민불인정 결정(17일)
- 2017. 7.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소제기 / 위와 같은 난민면접조서가 다수 발견됨
- 2017. 10.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
- 2017. 12. 난민불인정결정 직권취소 (총 55건)
- 2018. 2. 2차 난민면접 후 난민인정결정
- 2018. 6. 유사한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판결)
- 2018. 7. 피해자 5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2018. 9. 법무부 설명자료 배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제기
- 2020. 2. 법무부 재심사 방침
- 2020. 9.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572400 결정)

##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1.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을 포함하여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보장하기를,
2.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를 교부하면서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이름을 삭제하는 관행을 시정하기를,
3.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훈련과정과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를,
4.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에게 부과된 의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를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18가단5200580 사건 : 원고일부승

### 1) 소송 개요

- 2018. 09. 18. 소장 접수
- 피고1 대한민국, 피고2 통역인 J, 피고3 난민전담공무원 C
- 당사자본인신문 및 증인신문 진행
- 다른 피해자의 진술서 제출

저는 한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면접을 하였습니다. 제가 난민인정신청을 하러 갔을 때, 저를 처음 상대한 남성 직원은 제가 제 사유를 설명해 주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우 무신경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여자 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한테는 제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직원은 아랍인들과 아랍인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불쾌했으며,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아 이를 작성하러 간 곳에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충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쓰는지 다 볼 수 있었고, 프라이버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출할 준비가 끝나기 전에 업무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은 다음날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갔을 때, 같은 직원이 제게 공간을 채워 넣으라고 마찬가지로 못되고 경멸적인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면접 당시 직원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질문과 대답은 사실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들어간 뒤에야 직원들은 제게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다 한 다음 그들은 제게 면접조서에 서명하라고 하기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30분 정도였습니다.

난민신청 사유와 에서 폭행과 위협을 받은 경험에 대해 저는 이유로 가족, 특히 삼촌과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 도중, 여성직원은 제게 예/아니오 아니면 2-3단어 내로 짧게 대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대답이 길어지고 무슨 설명이 포함되면 직원은 제게 신경질을 내며 공격적으로 제 말을 잘랐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박해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끝난 뒤, 통역인은 제게 면접 내용을 인쇄해서 설명해 주고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강요했습니다. 면접 내용은 한국어로 적혀 있어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역인은 제게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제 개인정보를 읽고, 나머지 부분은 대충 빨리 지나갔습니다.

1년 뒤, 저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면접 내용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자 면접 도중 제가 대답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아예 면접 도중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여권을 발급받은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그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예,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돌아갈 수 있다" 고 대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조서에는 제가 였다고 되어 있었고, 마치 제가 직업이 없어 일하러 왔다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제가 4개월 전에 해고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당한 적이 없으며 를 떠날 무렵, 박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휴직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제가 에서 박해를 당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그 이유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아니오를 벗어나는 정보는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아니오, 저는 박해에 고통받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난민신청서에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무섭고, 한국에 온 이유는 박해가 두려워서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적어 놓았는데 면접조서는 이를 반대로 적어놓았습니다.

## 2) 원고 청구 요지

피고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난민면접에서 ① 피고 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② 피고 통역인은 원고의 진술을 충실하게 통역할 의무를, 피고들 ③ 공통적으로는 원고에게 난민면접조서 기재 내용을 확인시킬 의무 내지 변경 요청을 통역 및 기재할 의무를 위배하여 ④ 원고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통역 및 번역 내지 기재함으로써 실제 진술 내용과 달리 허위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날부터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날까지 난민지위가 인정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급비 등 소극적 손해와 불안정한 체류와 강제송환의 두려움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소극적 손해액 약 2천5백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 3) 1심 판결의 요지

공무원 C와 통역인 J가 담당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난민불인정처분이 취소된 유사사건의 경과를 상세히 살피고, 원고의 난민면접조서에 모순된 기재가 많은 점,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해 필수적으로 물어봤어야 할 내용들이 생략된 점, 면접 진행 시간이 부족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본인신문결과와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공무원 C와 통역인 J가 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하여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약 2천2백만 원과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합하여 총 3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1나81785 판결 : 원고패

- 대한민국은 항소하지 않아, 심판범위는 공무원과 통역인에 한정됨
- 피고 통역인 당사자신문 진행

## 1) 허위 난민면접조서 작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1심 법원 원고의 당사자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통역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간략하게나마 통역하고 어떠한 사항들이 적혀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는 등 전반적으로 상반되는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난민면접조서 기재 중 오직 난민신청 사유 내지 박해사실 관련 부분만 자신의 실제 진술 내용과 달리 작성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의 기재 중 원고의 이집트에서의 거주지, 가족, 직업 관련 부분은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서나 제2차 난민면접조서의 해당 기재 부분과 상이한 내용인 점, 통역인과 다수 난민면접을 진행하였던 다른 난민면접 담당 공무원이 법무부 검찰조사에서 통역인과 함께 진행한 모든 난민면접들에서 난민면접 종료 후 난민신청자에게 조서 내용을 문장 단위로 전부 읽어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원고는 난민면접조서 하단에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이라는 의미의 이 사건 아랍어 문장과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였음.

- 원고: 기재한 아랍어 문장이 의미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진술 내용이 아니라 개인 정보에 관한 확인의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주장

- 피고: 단순한 개인정보나 인적사항만이 아니라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미도 가진다고 주장

다의적인 문언의 문제일 뿐, 이를 들어 통역인이 허위로 통번역을 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조서의 내용확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공적 업무에 대한 소양이 있는데, 난민면접절차가 종료된 후 오직 자신의 개인정보 내지 인적사항에 관한 확인의 의미로서 자필서명 내지 위 아랍어 문장을 기재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2016-2017 난민면접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 사이에는 중동아랍권 출신 난민신청자들 중 취업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추후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난민면접에서 난민인정신청서 기재 내용과 다른 난민신청 사유를 진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 관하여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난민면접조서나 난민심사결정서의 상부 결재과정에서도 진술 내용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무원과 통역인이 작성한 다른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봐도, 피고들이 유독 이 사건 난민면접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해태하여 허위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이 다른 통역인과 진행한 사건에서 여러

박해 사유에 관한 난민신청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질문들, 조서 내용 검토 후의 추가 질문들 및 난민신청자가 요청한 수정사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통역인이 다른 공무원과 진행한 다른 난민면접조서에 난민신청 사유나 박해사리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여러 추가 질문들이 기재되어 있다.

(5) 다른 면접조서 중에 이집트의 경제 불황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취업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거나 난민신청 사유 또는 박해사실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다거나, 난민인정신청서 및 진술서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된 점, 난민신청사유가 거짓이며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례들, 취업 및 합법적인 체류 외에는 난민신청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으로써 난민신청자 체류 자격을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고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므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더라도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부터 3심에 걸친 행정소송까지 통상적으로 2~3년에 걸쳐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이 가능한 점, 이집트 출신의 난민신청자들 사이에 한국의 이러한 난민심사절차 현황에 관하여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신청자로서는 설령 진정한 난민인정사유가 있더라도 최초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면접 단계에서 한국의 난민인정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난민면접에 충실히 임하기보다는 이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보다 자세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있는 점, 난민인정결정을 받기에 보다 유리한 법적 구제방안에 집중함이 난민신청자에게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도,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에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의 기재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6) 법무부가 당시 ‘난민심사적체 해소방안’에 의거하여 공무원에게 1인당 처리목표를 하달하고 ‘일반 등 심사’의 경우 ‘신속심사’보다 2배의 실적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공무원은 실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심사로 진행하여 실적 점수를 더 용이하게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원고의 사건을 신속심사로 처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신속심사의 경우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일부러 원고의 사건을 신속심사로 진행할 유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집트 난민신청자의 비율이 급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조사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통역인 또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짧은 신속심사로 처리되도록 유인할 실익도 적다고 보인다.

(7) 허위기재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두 판결은,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의 전 대표 변호사에 대하여 전문 알선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유치한 후 분사무소 직원들을 통하여 난민인정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금전적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난민면접을 담당한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난민심사정책 수립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법무부의 책임에 주목하여 제도 개선 권고에 초점을 둔 것이고, 당초 진정내용과 달리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제외하고 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고내용만 포함하였다.

## 2) 불충분하고 형식적인 난민면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난민면접에서 긴장하고 위축된 난민신청자를 고려하여 난민신청 사유에 관하여 추가 질문 등으로써 보다 풍부한 진술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법행위는 인정됨.

(1) 통역인의 경우 난민면접에서 질의응답을 허위로 통역 내지 번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난민면접에 관여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난민면접을 불충분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위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보다는 경과실로 인한 행위에 가깝다.

- 법무부 2014. 11. 난민심사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난민심사업무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처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개인별 심사처리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이후 2015. 9.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난민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여 이를 확대하였음. 특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16년 난민심사에서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 중 94.4%가 신속심사로 받았음.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은 전담 공무원들에게 난민심사 적체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난민심사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구조적인 유인을 제공하였음.

- 난민법상 난민심사관 관련 규정과 달리 실무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난민전담 공무원이 난민면접을 진행하여 난민면접조서 및 난민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관련 서류들의 결재를 올려 순차적으로 결재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난민심사관이 난민면접이나 조서 기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은 사후 적정성만 검



토받은 업무구조였으므로 난민심사관이 보조인력인 공무원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등 지휘·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은 상부로부터 수정 내지 재 면접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팀장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고 공무원처럼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원고에 대한 불인정 결정이 이뤄진 공무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사유로 표창장을 받았는데, 주변 난민전담 공무원들은 이를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포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허위난민면접 문제가 제기되어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서울출입국은 난민전담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파악하였고, 팀장을 포함하여 피고 공무원은 법무부로부터 하달받은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

- 법무부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통상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을 생략하고 난민면접을 부실하게 진행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10. 감봉 1월 징계를 의결함. 공무원이 불복하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견책처분으로 변경함. 공무원 징계기준표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 내려지는 것임.

#### 4.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다202202 판결 : 심리불속행 기각

#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본 난민행정권력의 문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 1. 들어가며

지난 2024. 4. 12. 대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난민허위면접 사건<sup>1)</sup>)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면접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심 법원은 원고 및 원고와 동일하게 면접이 조작되었던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해 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항소심 법원은 공무원과 통역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문에 옮기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여 난민면접조서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면접담당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가해그룹은 이를 무시한 채 당시 법무부가 무리하게 강행하였던 위법한 신속심사 지시에 부응하여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위법하게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조서를 조작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불가피하였다’며 가해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sup>2)</sup>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본 행정권력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의 질문인 “제도의 공동화 속에서 행정권력은 난민에게 어떻게 작동되었나 (2) 난민은 행정권력에 의해 어떤 피해를 입었나 (3) 난민 인권운동그룹들은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막아내기 위해 어떤 대응(운동)을 만들어왔고,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정리했다.

## 2. 제도의 공동화 속 행정권력은 어떻게 작동되었나

### (1) 법무부의 신속심사 지시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은 면접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이 허위로 면접을 진행한 사건

- 
- 1)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라 명명해왔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자료는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2020. 7.)” <https://nancen.org/2086> 에 기록하고 있다.
  - 2)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성명서]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24. 4. 17. <https://nancen.org/2406>

으로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2014년 11월부터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sup>3)</sup>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sup>4)</sup>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전담공무원 1인 기준으로 월 15~25건의 난민심사를 처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처리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신속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40-44건을 처리목표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처리목표에 미달한 경우 경위서를 내도록 하는 등 지침을 무리하게 이행하려 하였다. 당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속심사 대상이 된 난민신청자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16년에 심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건수는 3,436건(68.6%)이었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신청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심사로 분류되어 처리되었다<sup>5)</sup>.

2015년		2016년		2017년 4월까지	
심사	신속유형	심사	신속유형	심사	신속유형
2,780건	1,454건	5,010건	3,436건	1,380건	1,060건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 (2) 난민법상 절차적 권리의 형해화

한편 ‘난민 허위면접 사건’은 난민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sup>6)</sup> 2012년에 제정, 2013년 7월 시행된 한국 난민법은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3) 지침상의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 ① 거짓 서류 및 거짓 진술자, ② 남용적 재신청자(3심 종료 등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자, 재신청이 협약상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자, 1차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후 최초 신청과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미흡한 자), ③ 1년 이상 체류 후 체류기간 만료 임박 신청자(E-9 등), ④ 강제퇴거 집행 지연 목적 신청자, ⑤ 협약상 사유가 아닌 신청(토지 분쟁 등 사인간의 박해), ⑥ 족장승계, 켈트, ⑦ 본국에서 비정치적 중범죄자, 동아일보, 2019. 8. 7. 자 기사 "[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4) 2014년 11월 10%에서 2015년 9월 40%로 상향조정

5) 국가인권위원회 2020. 9. 10.자 18진정0572400 결정

6) 이에 대하여는 난민인권센터,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확인한 난민심사절차 문제점과 과제”, 2021. 12. 19. <https://nancen.org/2218>

확보하고 특히 난민면접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의 표제 하에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요건과 업무의 수행방식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난민면접을 녹음·녹화하도록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무원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며,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난민법상의 위 규정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난민신청자의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난민면접 조사를 진행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하여는 난민법령에서 아무런 자격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난민면접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담당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면접조사에 대해 전권을 휘둘러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대로 면접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난민법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야한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난민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왔다. 피해사례 중에서도 역시 단 1건도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례가 없었으며 난민법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사례도 없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자신의 난민면접이 조작되었고,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아무런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피해사실도 모른 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아야 했고,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수입하였거나 난민단체를 찾은 아주 소수의 난민신청자가 조력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3) 공무원과 통역인은 어떤 짓을 저질렀나

#### 1)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의무

한편,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과 지침'에서는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통상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는 생소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많은 경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외국의 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설명해야 하므로 기술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 인정 신청의 심사는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개별 신청인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편람 190항).
- 신청을 제출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서류나 기타 증거로써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신청인이 모든 진술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박해를 피해 온 사람은 최소한의 필수품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분 관련 서류조차 없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을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이 공유한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관이 신청을 뒷받침하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독립적인 조사조차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진술에 따라서는 증명할 수 없는 성격인 것도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달리 불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추정(benefit of the doubt)을 해야 한다(편람 196항).
- 사실인정(fact-finding)의 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이 편람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기본적인 정보는 최초로 표준적인 설문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종종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는 통상적으로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므로 1회 이상 개별 면접이 요구된다. 심사관은 신청인이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당연히 신청인의 진술을 비밀로 다루고, 신청인에게도 그 점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편람 200항).
- 심사관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관해 내린 결론 및 신청인에게 받은 주관적 인상이 신청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어지므로, 심사관은 이들 법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의 관념 및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사관의 개인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편람 202항).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난민협약과 난민법령 및 난민편람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자신의 편견이나 예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자의 박해사항이나 면담과정에서 나온 난민신청자가 받은 위협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처음 작성한 난민신청서에 배치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경우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는 등 충실한 면접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모든 진술은 왜곡 없이 정확히 통역되어야 하며, 통역인은 언어적 역량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사실상 난민면접의 책임자인 난민심사관은 현실적 여건으로 난민전담공무원이 실제 법무부의 면접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난민전담공무원이 성실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난민면접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 2) 가해공무원 등의 위법행위

이와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가해그룹인 공무원과 통역인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왜곡하여 면접조서에 기재하는 난민면접조작을 저질렀다. 공무원은 태국어 특채로 선발되어 2015년 1월부터 난민면접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을 담당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약 3년 동안 아랍어권역 난민심사를 600건 이상 수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상에 기재된 당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던 통역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다수의 난민면접에서 특정 답변 틀을 고수하여 요약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난민신청자가 설명을 길게하면 중간에 가로막거나 통역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요약해서 통역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입국 목적에 대해 난민신청자가 '본국에 문제가 있어 한국에 왔다'고 하면, '솔직히 돈 벌러 온 것 아니냐, 일하러 왔잖아' 라고 질문하고, '현재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느냐', '한국에서 왜 일하고 있냐'는 등 박해사항보다는 경제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통역인은 아랍어를 학부에서 이중 전공한 것에 불과하고 기타 관련 경력 등이 없음에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어 2013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아랍어 면접을 진행하였다.<sup>7)</sup> 통역의 정확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난민전문통역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수백 명의 난민면접에 통역인으로 참여하면서 수당을 받았고, 난민

7) 국가인권위원회 2020. 9. 10.자 18진정0572400 결정

허위면접 사건에 적극 가담 또는 방조하였지만 이후 징계 등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가해그룹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였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난민신청자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박해에 관한 사항조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난민면접은 형해화 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sup>8)</sup> 행정의 효율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난민면접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을 찾는 절차로 왜곡되었으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난민면접과정에 개입되면서 공정하게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가 훼손되었다.

더욱이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면접조사에 대해 전권을 휘둘러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대로 면접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정작 난민법상 난민면접의 수행담당자이자 책임자인 난민심사관은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상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에 직접 참여한 적도 없고, 난민면접조서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난민팀장 역시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난민팀장 역시도 난민면접조서를 검토하지 않았고, 난민면접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보고서 결론에서 사실관계 오류나 논리가 잘못된 경우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sup>9)</sup> 결과적으로 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면접조서 및 심사보고서가 아무런 감독 내지는 통제 없이 그대로 결재되었다.

### 3.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

#### (1) 조작된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결정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8)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9) 국가인권위원회 2020. 9. 10.자 18진정0572400 결정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답: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없었으며,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면접조서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확인하게 된 피해자들의 난민면접 조서 사본에는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밝혀진 피해사례 모두 난민법상 난민면접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피해에 대한 당사자 증언<sup>10)</sup>

### 1) 사브리(Sabry)의 증언

2016년 7월, 나는 망명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다. 그리고 그 때부터 군부쿠데타 이후 또다른 고달픈 나날들이 시작되었다. 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해진 면접조사 중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 심사관은 나에게 내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를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심사관이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한국정부가 행하는 정식 면접을 받는 중입니다. 제대로 행동하세요.” 또한 심사관은 면접 도중 나에게 “입 다물어요”라고 하기도 했다. 심사관에게 내가 질문에 대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려 하자 통역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을 텐데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심사관과 통역의 행동 역시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면접은 조작되었다. 그 근거로 심사관이 작성한 면접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 내가 난민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이에 대해 자백했다고 적혀 있었다. 2.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이집트에서 아무 직업이 없었기에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고 적혀 있었다. 3. 나에게서는 외국에서 일하는,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쌍둥이로 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 쌍둥이 형제는 당시 수감 중이었다.

10)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https://nancen.org/1948>



## 2) 무나(Muna)의 증언

면접 당시 직원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질문과 대답은 사실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내가 이미 들어간 뒤에야 직원들은 내게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 그들은 질문을 다 한 다음 내게 면접조서에 서명하라고 하기까지 시간을 끌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30분 정도였다. 면접 도중, 여성 직원은 내게 예/아니오 아니면 2-3 단어 내로 짧게 대답하라고 강요했다. 만약 대답이 길어지고 무슨 설명이 포함되면 직원은 나에게 신경질을 내며 공격적으로 내 말을 잘랐기 때문에 나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

질문이 끝난 뒤, 통역인은 내게 면접 내용을 인쇄해서 설명해 주고 서명하라고 했다, 아니 강요했다. 면접 내용은 한국어로 적혀 있어 나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통역인은 나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내 개인정보를 읽었고, 나머지 부분은 대충 빨리 지나갔다. 내가 특정 부분을 짚어서 이 부분이 뭐라고 쓰여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읽고 통역해 주었으나, 그가 읽은 내용은 정확하지 않고, 내가 대답한 것과 달랐다. 그리고 그는 한 단어 한 단어 전부 통역해 주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 그 내용을 보면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것처럼 해놓았으나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달랐다. 1년 뒤, 나는 (난민인정을) 거절당해서 법원에 갔다. 그러자 변호사가 면접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줄도 몰랐다. 내용을 확인하자 면접 도중 내가 대답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적어놓았다. 그들은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적어놓았다. 아예 면접 도중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여권을 발급 받은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다. 그들이 내게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그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내 대답이 “예,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내게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이었다. 여기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적혀 있었다.

## 3) 라힘(Rahim)의 증언

첫 번째 면접은 한 시간이 채 안 걸렸는데 그녀는 내게 간단히 답하라고 요구하며 여러 차례 자세하게 대답하려는 것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나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도 되

는지 물었지만 심사관은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집트 정부에 직접 문의할 것이라고 했다. 심사관은 결혼일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 가족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와 같은, 내가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주로 했다. 내 난민 인정 신청이 처음 거부당한 후 변호사가 나의 면접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진술서에 모두 거짓 정보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는 내 여권에 있는 정보도 잘못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왔고 이집트에서는 어떠한 위험에 처하거나 차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라고 심사관은 적어 놓았다.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모든 것이 내가 말하고 적은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제 난민 협약 규정에 준하는 공정하고 편견 없는 조사를 받기 위한 우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 (3) 혐오피해

당사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2차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 한 당사자는 조작된 난민면접조서가 난민수용 반대를 외치는 집단에 의해 활용되어 언론 등을 통해 ‘가짜난민’의 오명을 써야 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신청을 악용해 사실상 무한정 체류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중략) 이집트인들을 향해 “그럼에도 당신들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법을 이용해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난민 인정이 기각당하자 단식을 하면서 때 법으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며 “나아가 이제 기자회견과 농성을 하며 난민인정 법리를 악용하려는 시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집트 가짜 난민들은 법치주의 무력화 시도와 감성팔이를 즉각 중단하고 이 땅을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다. (중략, 조작된 난민면접조서를 인용하며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이집트인들의 난민 신청 이유.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해 우리나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집트에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위해 떠나왔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sup>11)</sup>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도 이미 재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피해자에 대해 다시 한 번 난민사유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하며 검증하는 시도가 지난하게 반복되었다. 공무원과 통역인은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말의 죄책감도

11) 크리스천투데이 2018. 8. 23. 자 기사, “이집트인들, 난민 신청 탈락했다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무원은 재판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다른 난민 신청자들의 출입국 관련 정보까지 유출해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난민혐오의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 (4) 장기구금, 출국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미 피해를 겪은 많은 당사자들은 출국했고, 약 8개월 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하였다.<sup>12)</sup> 이 사건을 함께 공론화 하는 데 앞장섰던 당사자들 역시 일부는 난민인정을 받았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채 지난한 과정에 지쳐 한국을 떠났다.

#### (5) 무한 재신청의 굴레

한편, 법무부가 지시한 신속심사 대상에는 '재신청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재신청자는 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제대로 심사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부실한 졸속심사를 거쳐 바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아랍어로 난민면접을 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개별 신청을 통해 재심사의 권리와 체류자격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지만<sup>13)</sup> 대다수는 여전히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못하여 재신청을 반복하고,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을 받거나 출국기한유예 상태로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속심사 지침에 더해 법무부는 체류지침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sup>14)</sup>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또는 유학생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등 특정 사례군에 대한 체류제한을 강화하여 체류연장을 거부하거나, 출국명령을 내리는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난민재신청을 억제하고, 난민재신청에 대해 일률적으로 '체류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낙인을 찍어왔다. 현재까지도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체류지침의 운영으로 인해 난민재신청자는 사실상 모든

12) 동아일보 2020. 7. 7. 자 기사 "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현장에서/박상준]"

13)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155면; 한겨레 2020. 4. 21. 자 기사 "[단독] '난민면접 조작' 피해자 수천명 재심 기회 얻었다"

14)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에 대해 체류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이 최초 도입된 시기는 2015년 4월이다.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2016년 7월부터 체류허가 제한 심사대상자로 처리하는 지침을 운영 중에 있다.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관련 토론회(2023. 6. 15.) 자료집" 참고, <https://nancen.org/2361>

권한이 박탈된 상태로, 없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sup>15)</sup>

#### 4. 어떤 대응을 만들어왔나<sup>16)</sup>

##### (1) 서설

이 사건은 당시 난민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먼저 인지하였다. 난민 면접조서 및 난민불인정 사유서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심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난민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받은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였다. 변호사 또는 난민단체를 만나게 된 극소수의 난민신청자들이 소송 수행을 위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돈을 벌러 와서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유일한 증거였던 면접조서에는 난민심사관, 담당공무원, 통역인의 이름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면접조서 하단에 동일하게 기재된 통역인의 서명이 유일한 단서였다. 이 사건은 허위통역의 문제로 먼저 대두되었다.<sup>17)</sup>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면접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몇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인물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8. 7. 18.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2018. 9. 18. 처음 시작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해당 공무원과 통역인이 공모하여 난민면접을 조작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제기되었다. 이후 한 언론사가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취재하며 법무부에 수차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신속심사를 지시하였고, 조작된 사건들은 모두 ‘신속’으로 분류되어 간이 면접 후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sup>18)19)</sup>

이후, 난민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으로 명명하였다. 이 사건은 공무원과 통역인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핵심이고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법무부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한 조직적인 책임이 있었고, 또한 그간 지적되어 왔던 난민심사제도 운영

15) 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관련 토론회(2023. 6. 15.) 자료집" <https://nancen.org/2361> 현재는 난민법 제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16) 이에 대하여는 김연주,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공익과인권 20권(2020)에 정리하였다.

17) 국민일보 2028. 7. 9. 자 기사 “[단독] 줄이는 난민 신청자 영터리 통역에 눈물… 드러난 난민심사 허점”

18) JTBC 2018. 9. 2. 자 보도 “[이슈플러스] 돈 벌려고 난민신청? 거짓 조서로 영터리 심사“

19)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자료집(미간행)” 69-77면.

의 문제점이 여실히 반영되어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 (2) 사건의 공론화

2017. 10. 12. 공식적인 법원 판결을 통해 난민심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재심사하는 등의 미온적인 조치만 이루어졌다. 처음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2017. 12. 26. 법무부 난민과(현 난민정책과)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당시에도 법무부는 면접조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면접조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2018. 7.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었다. 일부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하면서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앞에 서는 것이 또 다시 어떠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에서의 증언을 위해 모욕적이고 힘들었던 과거 난민면접 과정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결국 두 명의 당사자가 대표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게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자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sup>20)</sup>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국가패소한 사건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면접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55건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재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그 중 2건 난민인정, 44건 난민불인정결정 하는 등 현재까지 53건(철회 등 7건 포함)을 처리완료 하였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어떠한 범위와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직권취소할 사건을 선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지 약 2년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권취소가 된 피해자들마저도 직권취소가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일체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불

20)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 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 설명자료, 2018. 9. 6.

안정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난민신청자도 발견되었다.

이에 2019년 세계난민의 날을 앞둔 2019년 6월 18일, 당사자들은 증언대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사브리(Sabry), 무나(Muna, 가명), 라힘(Rahim, 가명), 아미르(Amir, 가명, 대독), 아담(Adam) 5인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시 한 당사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증언대회에 나올 수 없었고, 한 당사자는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얼굴과 목소리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증언대회를 1분 앞두고 얼굴을 드러내어 발언하기로 결심하였다. 당사자들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날의 기억을 되짚어 가며 경험한 일들과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말로 꺼내놓은 힘은 컸다. 당시 현장을 뺄곡히 메운 참석자와 기자들은 마지막 증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다수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여러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편,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에는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자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피해자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분노했다. 적극적인 취재가 이어졌으며 기사화되었고 법무부의 움직임이 이끌어냈다.<sup>21)</sup>

### (3) 증언대회의 효과 : 공무원 징계요구와 피해자 회복방안 논의 진행

증언대회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 7.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하면서, 재발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 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및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sup>22)</sup>

이어 법무부는 2019. 7. 18. 공무원에 대해 내부 감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sup>23)</sup> '통상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을 생략하고 난민면접을 부실하게 진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징계 사유였다.'<sup>24)</sup>

21)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자료는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2020. 7.)" <https://nancen.org/2086> 참고

22)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보도자료(제50-24호, 2019. 7. 11).

23) 법무부, 2019. 7. 23. 자 설명자료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이와 함께 법무부 난민과(현 난민정책과)는 7. 26.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하여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피해 사실들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법무부는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난민단체의 재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이유를 들며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다. 총 5번의 간담회<sup>25)</sup> 끝에 특정시기에 아랍어로 면접이 진행된 난민신청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sup>26)</sup>

#### (4)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sup>27)</sup> 등 일부 제도개선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공론화는 일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해 위촉과정과 교육을 재정비하고,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며 난민업무 담당자를 신규채용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2019년 10월까지 기존 난민업무 관련 법령, 지침, 편람 등을 보완·편집한 세부 심사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임을 약속했다.<sup>28)</sup>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피해사례 중 단 1건의 난민면접도 녹음 또는 녹화가 되지 않았다. 조작되어 작성된 면접조서 외에 당시 면접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또는 녹화 파일이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에게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가해상황을 증명할

24)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10. 18. 공무원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무원이 불복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30. '당시 난민심사 적체문제로 인한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 면접관 및 통역인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이 담당 난민심사 건들의 신속한 처리와 상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공무원이 그간 팀장, 과장, 소장 결재과정에서 경제적 목적 난민신청 건의 난민면접조서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공무원이 재직기간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직장동료들이 공무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1나81785 판결

25)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1차(2019. 7. 26.), 2차(2019. 8. 22.), 3차(2019. 11. 19.), 4차(2019. 12. 30.), 5차(2020. 1. 13.)의 간담회를 가졌고, 실무자와 수시로 협의하였다.

26) 한겨레, 2020. 4. 21.자 기사, "[단독] '난민면접 조작' 피해자 수천명 재심 기회 얻었다",

27) 난민인권센터,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https://nancen.org/1998>

28) 법무부 설명자료,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 설명자료,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대응을 통해 법무부는 2018년 7월부터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난민면접 시작 시에 녹음·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였다는 점을 면접조서에 “면접 녹화 고지 필” 등의 형태로 기재하고 있다. 2019년부터의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면접 영상녹화가 대부분의 난민면접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9)</sup>

### 2019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여수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인천공항
면접건수	3766	749	509	106	501	241	21	11	3	147
실시건수	3705	737	499	106	481	213	21	11	3	147
미실시	61	12	10	0	20	28	0	0	0	0

## 5. 어떤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까

### (1) 서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난민심사 제도 운영의 일부가 바뀌는 변화가 있었고, 책임자 징계·피해회복 방안의 마련 등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문제제기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더욱이 그간 법무부의 신속심사 지시와 난민심사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 1차적이고 핵심적인 책임을 지는 가해집단에 대해 법원에서 면죄부를 주는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난민의 피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어 가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면접영상녹화 파일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모니터링, 난민재신청자 등 법무부의 ‘남용

29)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 그간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에 따르면 2015년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 건수는 총 521건, 2016년은 총 335건, 2017년은 총 818건에 불과했다.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7.12.31.기준)", <https://nancen.org/1689> 2018년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 건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다.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https://nancen.org/1939>



적 난민' 프레임에 대한 대항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행정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까.

## (2)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 공개

난민면접에 대한 영상녹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난민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난민면접에 대한 영상녹화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법무부는 난민업무지침에 의거해 열람까지는 가능하지만 영상녹화 기록을 파일로는 공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0)</sup> 그런데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및 조력자를 선임하여 출입국이 지정한 날짜에 출입국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열람할 수밖에 없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진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영상녹화 기록 열람신청 및 허가 건수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난민면접 영상녹화 전면실시로 대부분의 난민신청에 대한 영상녹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열람신청 및 허가 건수는 매우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녹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구제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변호사 등 조력인과 함께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사무소별 영상녹화 파일 열람신청 및 열람허가 건수 (2021-2023)<sup>31)</sup>

연도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2021	신청건수	1	0	0	0	1	0	0
	허가건수	1	0	0	0	1	0	0
2022	신청건수	3	2	0	1	0	1	0
	허가건수	3	2	0	1	0	1	0
2023	신청건수	2	3	0	1	1	0	1
	허가건수	2	3	0	1	1	0	1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

30) 뉴스토마토, "'난민 심사면접 영상녹화제도' 5년째 정착 못해", 난민단체 "난민 신청대비 10% 미만...녹화파일본 등 교부도 거부"

31) 난민인권센터,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3.12.31. 기준)", <https://nancen.org/2398> 등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2023. 3. 31.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4. 1. 18.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sup>32)33)</sup>

판결문에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일관되는지 여부가 난민지위 인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이 사건 신청자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난민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편하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였다든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등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별도로 확인할 실익도 있다”고 보았다.

판결문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에 대하여도 언급하며,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공개가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며 그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종래에 난민신청자가 최초 면접 시에 제대로 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부실한 면접조사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2018년경 다수의 언론에서 난민심사관과 통역인에 의하여 난민면접조서가 다수 조작되어 왔다는 보도가 이루어지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면접과 조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2017년)을 전수조사하여 55건에서 부실한 면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재면접을 실시하여 그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난민신청 자진철회 10명, 난민불인정 43명),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2018. 7.경부터 난민신청자 본인의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9. 10. 법무부장관에게,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을 포함하여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보장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18진정0572400). 따라서 난민법 제8조 제3항의 난민면접 녹음·녹화 범위(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

32)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60339 판결

33) 한겨레 2024. 1. 19. 자 기사 "법원, '난민면접 조작' 녹화 제공 못 한다는 법무부에 "공개해야""

에서더 나아가 위와 같이 난민면접을 원칙적으로 녹음·녹화하게 된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측면이 있고, 녹음·녹화된 파일의 공개는 피고가 수행하는 난민면접 업무를 비롯한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며 그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항소하면서 아직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난민면접 영상녹화가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난민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 파일을 교부 받고 이를 자신의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행을 바꿔야 하는 개선과제가 남았다.

## (2) 난민재신청자 문제와 난민법 개악 대응<sup>34)</sup>

### 1)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계속적으로 '난민제도의 오남용 방지'라는 명분으로 난민신청을 제한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난민면접 등 기본적인 난민심사보장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충실한 난민심사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기보다는 난민법을 개정하여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해 아예 면접조사를 생략하려 하고 있다.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난민결정이 취소·철회된 사람,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이 철회간주된 사람 및 개정안에 따라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14일 이내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신청자가 스스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부적격결정을 내리고 부적격결정이 내려진 경우, 난민법상의 난민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의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난민법이 난민인정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신청절차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 난민심사 제도가 외국인의 합법적인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경우에도 재신청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을 근거로 삼고 있

34) 김연주,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공익과인권 23권(2023)에 정리하였다.

다.<sup>35)</sup> 그러나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는 한국의 상황에서 도입하기에 시기상조이며, 대다수의 난민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강제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sup>36)</sup>

## 2) 난민전담공무원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난민심사가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민심사의 인력과 그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난민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27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제6조에서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①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난민심사를 전담하는 심사관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난민법의 유일한 규정인데,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일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나아가 난민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는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하며,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사무소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에만 난민법에서 정하는 난민심사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37)</sup> 즉,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 피해사례 대부분의 면접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역시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공익법무관이 난

35) 심정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22. 12.).

36) 이미 현재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을 협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신청 난민들은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재신청 접수가 거부되거나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음.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에 관한 신설안은 재신청자에 대하여는 이미 난민사유가 없는 '남용적 신청자'일 뿐이라는 출입국의 근거없는 추측과 부당한 관점을 법문으로 승격시켜 이들을 신속히 퇴거시키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임. 난민인권네트워크,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1.25 출처: <https://nancen.org/2150> ;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예비심사는 이전 절차에서 주장이 온전히 본안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하고 있으며, 재신청의 예비적 심사에서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핵심이라 보고 있음. 대한민국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비공식 번역본 19항 (7면) 출처:

<https://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opendocpdf.pdf?reldoc=y&docid=60f5292b4>

37) 난민인권센터,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3.12.31. 기준)", <https://nancen.org/2398>

민법상 자격 없이 난민심사에 투입되기도 하였다.<sup>38)</sup>

난민면접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통역인을 거쳐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면접조사 마무리까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면접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난민심사관 등 다른 공무원이 감시를 하거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난민면접조작사건이 발생되었을 당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이 조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면접조사에 대해 전권을 휘둘러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대로 면접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난민면접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난민심사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난민심사의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난민법을 개정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을 난민면접조사의 주체로 명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난민법 개정안 제8조의2, 제10조, 제13조, 제15조). 즉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 (3) 통역인 인증제도 모니터링 및 기타 제도개선 과제

#### 1)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난민전문통역인제도 역시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 이슈화를 계기로 일부 변화를 맞이했다.<sup>39)</sup> 이전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난민전문통역인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아무런 세부규정이 없고 난민전문통역인 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역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통역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8년 4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풀을 재정비하고, 난민통역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0년에도 난민통역 품질평가 및 보수교육을

38) 동아일보, 2019. 8. 7.자 기사, “[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국가인권위원회 2020. 9. 10.자 18진정0572400 결정

39) 난민인권센터,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https://nancen.org/2393>

실시하였으며 2021년 난민통역인증제가 도입되었다. 난민통역인증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난민통역인을 평가·검증하여 통과한 이들을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을 하는 형태이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신규 위촉한 난민전문통역인은 러시아어 33명, 중국어 32명, 영어 24명, 베트남어 18명, 미얀마어 6명 등 총 25개 언어권의 148명이다. 이와 같이 법원과 난민업무 분야에서 최근 '통역인 인증제도'를 공식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법무부는 통역 분야의 대표성을 띄는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통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수통역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선발과정과 교육과정, 통역인의 관리와 책임소재 등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나듯 통역인의 중립성과 윤리의 문제 역시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과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 2) 조력권의 보장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난민심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과 심사진행 과정, 특히 난민면접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에 이를 선언하는 차원의 법조문 하나만 있을 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사제도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변호사 조력 없이 난민신청 과정을 혼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난민면접에 동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단 한건도 변호사의 조력이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거나, 난민면접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을 경우, 심사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향후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조력이 잘 뒷받침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3) 난민심사결과통지 통번역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자신의 난민면접이 조작되었고,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아무런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적법·타당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고 난민신청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직결되는 문서에 대한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접 당시 통역인이 확인해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정확성을 달리 검증할 길이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자신의 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적혀 있어도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초적인 문서에 대한 통번역 제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심사기관의 의무에 대해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향후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구금의 과정에서 남용되는 행정권력,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의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화성의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아정

### 1. 외국인보호소 '새우깡기'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의 의의와 한계



<사진1> 2022년 2월, '새우깡기' 고문피해생존자 M이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난 이틀 후, 여수출입국 화재참사 추도식에 참여하여 퍼포먼스를 자처했다. (사진: 박상환)



<사진2> 2024년 5월 9일, 승소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진: 박상환)



지난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022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깍기'고문 피해생존자 M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M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새우깍기' 등 가혹행위에 대해, M이 구금 기간 중 받은 18건의 특별계호(보호 외국인을 별도 장소에 격리) 처분 중 4건에서는 법정 기한을 초과해 격리됐다고도 짚었다.

다만, 5일 이내인 독방 계호 기간을 초과한 점은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독방 격리 자체가 징벌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M이 뒷수갑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침구류 없이 취침하게 한 것은 "원고가 방충철망을 뜯으며 유리조각을 소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므로 자해방지 등을 위해 뒷수갑을 채웠고, 스스로 옷을 벗고 매트리스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계속해 모포나 옷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혹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새우깍기 고문사건 1심 판결 관련 판결문 내용 요약]

- \* 특별계호(독방구금) - 일부위법인정
  - 불이익한 처분 X
  - 절차적 위법 X
  - 독방 구금의 기간 산정 방식이 위법 O
  
- \* 보호장비 사용 - 일부위법인정
  - 뒷수갑 취침 위법 X
  - 복합사용 위법 X
  - 새우깍기 위법 O
  -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장비사용 위법 O
  
- \*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X

[판결의 의의]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보호소의 '독방구금 기간산정(교도소보다도 더 느슨하게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했던 '박스테이프나 케이블타이 사용'이 위법한다고 확인된 점.
  
- 판결 전체가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권 인정되니, 자의적인 법집행은 안 된다"는 전제를 확실히 했다는 점 +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위법으로 보고 금전배상을 명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음. (이상, 공익인권법재단 김지림 변호사 작성)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의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국가의 이름으로 M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밝혔고,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는 “원고에게 행해진 위법행위들을 살펴보면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독방 구금, 강제력 행사 등이 얼마나 체계 없이 함부로 이뤄졌는지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1)</sup> 그러나 판결에서 철차적 위법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보호소나 보호실에서 구금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해당 공무원이나 경비/계호인력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보호소 측에서는 자해의 위험이 있는 구금인의 신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이유를 제시하곤 한다.<sup>2)</sup>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판단일까? 그러한 판단으로 이른바 ‘공무수행’ 중에 구금인이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2. 계속되는 뒷수갑과 머리보호대 사용과 행정권력의 자의적 판단-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사망 사건의 사례

출입국공무원에 의한 ‘불가피하다’는 상황 판단은 구금인을 제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위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려진다. 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독방)’, 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실’에서 발생하는 존엄성의 훼손은 빈번히,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지금도 화성외국인보호소 등에서는 다분히 징벌적인 의미를 지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독방 감금이 계속되고 있다. 자해를 한다고 독방에 가두면 문제가 해결되나? 장기구금으로 인한 정신질환, 알콜의존증 환자, 약물사용자, HIV감염인에게 왜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아닌 격리 구금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하는 것일까? 그러한 조치야말로 최대한 피해야하는 대처가 아닐까?

상해 혹은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말하며, 당사자들의 취약성을 사건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저열함을 보인다. 그러나 들이 왜 자해에 이르렀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거나, 오히려 그들의 취약성에 대해 겹겹의 혐오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해명을 내놓기 일쑤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모두 곧바로 외국인보호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단속된 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서 지내다가 출국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지는 것이 맞지만, 외국인보호소 과밀 수용이 부담되어서인지 코로나가 유행하던 때부터 출입국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지내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내 보호실에 수용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출입국사무소 내 보호실에서의 장기 구금은 더 큰 문제

1) 김지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가혹행위…법원 “국가가 1천만 원 배상하라”」 『한겨레신문』 (2024/05/09)

2) ‘새우껍기’ 고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건이 폭로된 후 이어진 항의에 대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2021년 11월 초 법무부 자체조사를 통해 M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재명, 「인권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가혹행위는 인권침해”」 『법률신문』(2021/11/16)

를 안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내 보호실은 단속된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구금하는 곳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구금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임시 수용시설이다 따라서 상주하는 의료 인력도 없고 외부 운동장이나 샤워장 등이 마련된 곳도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이곳에 머무는 것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머무는 것보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고 수용된 외국인의 정신과 신체에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sup>3)</sup>

2022년 8월 16일,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수용된 지 8시간여 만에 사망한 태국 국적의 A씨(45)가 사망 당일 독방에서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를 착용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에게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뒷수갑을 채운 건 ‘자해방지’를 위해 ‘불가피’했던 ‘최소한의 ‘안전조치’였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고문사건에 대처했던 보호소 소장의 말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출입국이 말하는 그 ‘보호’와 ‘안전’은 뒷수갑을 채우고 머리보호대를 씌워서 건장한 남성 여럿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제압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2022년 8월 23일, 사망 일주일 후 사실을 알게 되어 확인 차 연락했을 때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담당자는 분명히 말했다. 입소 당시 코로나 검사를 했고, A의 체온도 정상이었으며, 건강상태도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보호실’에 갇히고 몇 시간 후, ‘출입국공무원’과 ‘경찰’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 없이’ 자기들끼리 A가 이상행동을 보이니 ‘정신질환’인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그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했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A는 길바닥에서, 구급차 안에서 허망하게 죽었다. 이 사건은 의료진 한 명 없는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부적절하고 자의적인 의료적 판단으로 의료적 위급상황의 초동대처에 완전히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되었다. 결국, ‘마약과다복용’이라는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왔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사도 끝나면서 그의 죽음은 그대로 묻혔다. 대한변협의 요구에도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CCTV를 내놓지 않았다. 마약과다복용? 입소 당시엔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는데? 좋다, 그렇다고 치자. 마약과다 복용을 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적 판단이나 조치 없이 독방에 가두고 제압하고 묶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길바닥에서 죽게 만든 책임은 왜 물을 수 없나? 마약을 과다복용한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되나?

입소 당시 약물사용자나 정신질환이라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취약성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독방 감금, 제압 과정, 보호장비 사용, 호송과정, 의료시설 미비 등 그의 취약성을 강화했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출입국 공무원과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2년이 다 되어가는 A의 죽음은 남용되는 ‘행정권력’이라는 문제 지형의 최전선, ‘자의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으로 ‘사건화’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사건 발생 후에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CCTV는 못 내놓겠다며 “유족이 더 이상 사건화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유족들은 어디까지 설명을 들였을까. 어떤 회유나 협박을 당한 건 아닐까? 유족이라고 해서 망자의 권리를 포기할 자격이 있나? 유족과 망자는 어떤 관계였나. 이 사건은 유족과 망자만이 피해 당사자일까. 이 죽음은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는 이들만의 문제인가? 당사자성은 어떤 점에서 문제적이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공동의 문제로 다뤄나갈 수 있을까.

3) 김대권, 「2023년 외국인보호소 현황 및 자료 분석」 『마중활동보고서(2023)』, 8쪽(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3. '단속 트라우마'가 덮쳐오는 '보호실', 행정권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절실히 요청되는 공간  
-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의 HIV 감염인 격리 수용/추방 사례

2023년 8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한 달 동안 구금된 상태였던 S를 만났다. S는 HIV 감염인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던 터였다. 단기간 구금을 위한 공간인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의 '보호실'은 외국인보호소의 '수용거실'보다 훨씬 열악한 시설이라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강제출국을 하루 앞둔 S는 만난 적도 없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에서 살았던 7년이라는 시간이, 일상이, 이제껏 맺어온 관계들이 '단속'으로 한꺼번에, 단숨에, 끊어져버렸다고, '보호실' 직원들에게 들어야했던 혐오와 위협의 말들 때문에 너무 무서웠고, "너는 에이즈 걸렸으니 이 나라에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출국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단속'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시간대이기에 단속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비교적 확실하게 세세히 기억한다는 점, 그렇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의 '보호실'에 구금된 이들을 면회하며 구금된 이들의 몸과 마음상태를 챙기는 등 단속과 구금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사진3>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4층에 마련된 '보호실' 입구 (사진: 아정)

'보호실'에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 싶지 않아했던 본인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되었다. S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출입국에 전화했을 때, 전혀 관계없는 창구 직원이 전화 응대를 하면서 "아, 네에~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여러 출입국 직원들과 휴대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돌아가며 싸웠다. 신변을 정리해서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허락해 달라, 다니던 병원에 가서 복용하던 치료약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S의 요청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지만, 이토록 당연한 요구는 '불허'되었다. 아래와 같은 법무부 훈령 <보호일시해제 처리규정>은 '비국민' 'HIV감염인'을 장기간 보호시설에 가두고, 결국엔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된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법무부훈령) 제6조(대상) ① 청장 등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된 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해제를 할 수 있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 환자

이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HIV 감염인은 감염병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격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호실’에서 한 달간 격리 수용되었던 S는 한국을 떠났고, 이제 이곳에 없다. 수많은 S‘들’이 구금 상태에서 이런 부당한 격리와 혐오를 겪었을 것이고,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21년부터 1년이 넘도록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격리 수용되었다가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극도의 망상증세를 보이다가 보호소 직권으로 ‘특별보호일시해제’ 되어(=쫓겨나) 여러 쉼터와 임시숙소와 거리를 전전하다가 이 나라를 떠난 구금인 B의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 4. ‘구금인의 편의’가 아닌,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정책들- 외국인보호소 내 구금인들의 주요한 소통창구, 전화카드 문제

법무부가 운영 중인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울산 출입국·외국인보호사무소,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공중전화는 112·119 등 긴급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차단됐다.(현재는 연결됨). 계기는 공중전화를 운영해오던 KT가 ‘원포유’라는 업체로 변경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 주권단체 ‘마중’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과거 보호 외국인의 빈번한 긴급전화 사용으로 보호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긴급전화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24시간 동안 보호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sup>4)</sup>

외국인보호소는 국가주요시설이기에 WIFI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두 번, 계호인력을 동반해서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한 후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소 내 여건을 고려할 때, 공중전화는 외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데, 긴급전화를 보호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막아둔 것이다.

여러 차례의 항의와 면담을 거쳐 결국 긴급전화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화요금의 국가별 요율 문제가 비상식적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24년 5월 3일,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이민조사과와 면담을 진행했고, 입찰 시 ‘요율’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태국이나 베트남 등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들의 요율은 싸다”는 변명까지 더해졌다. 예를 들면, 알제리에는 1분당 3200원이 넘는 요금이 적용되어, 1만 원 짜리 전화카드 한 장을 3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귀국조치를 위해 구금한다는 법무부의 명분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외부를 향한 구금인의 소통창구는 원활한 편이 좋지 않을까? 애초에 인터넷 전화를 공동으로

4) 강한들, 「외국인보호소 공중전화 112·119 긴급전화 막은 법무부…“경찰·소방 업무 과중” 내세워」 『경향신문』(2024/04/15)

이용한다든가, 상시적인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다든가. 행정권력의 남용의 한편에서는 구금된 이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들에 대한 태만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61	93	아프가니스탄	PSTNIM	Afghanistan Mobile	1033.3
62	93	아프가니스탄	PSTNIL	Afghanistan	816.7
63	94	스리랑카	PSTNIM	Sri Lanka Mobile	960.0
64	94	스리랑카	PSTNIL	Sri Lanka	960.0
65	98	이란	PSTNIM	Iran Mobile	600.0
66	98	이란	PSTNIL	Iran	490.0
67	212	모로코	PSTNIM	Morocco Mobile	1200.0

68	212	모로코	PSTNIL	Morocco	1200.0
69	213	알제리아	PSTNIM	Algeria Mobile	3263.3
70	213	알제리아	PSTNIL	Algeria	326.7
71	221	세네갈	PSTNIM	Senegal Mobile	2066.7
72	221	세네갈	PSTNIL	Senegal	1086.7
73	231	라이베리아	PSTNIM	Liberia Mobile	1616.7
74	231	라이베리아	PSTNIL	Liberia	1196.7
75	234	나이지리아	PSTNIM	Nigeria Mobile	900.0
76	234	나이지리아	PSTNIL	Nigeria	900.0
77	242	콩고	PSTNIM	Congo Mobile	1795.2
78	242	콩고	PSTNIL	Congo	996.0
79	252	소말리아	PSTNIM	Somalia Mobile	2693.3
80	252	소말리아	PSTNIL	Somalia	1500.0
81	254	케냐	PSTNIM	Kenya Mobile	1176.7
82	254	케냐	PSTNIL	Kenya	477.0
83	256	우간다	PSTNIM	Uganda Mobile	1806.7
84	256	우간다	PSTNIL	Uganda	1930.0
85	258	모잠비크	PSTNIM	Mozambique Mobile	1550.0
86	258	모잠비크	PSTNIL	Mozambique	980.0

<그림1> 외국인보호소 원포유 공중전화 분당 요금표

이주구금 시설이 아니라 교정 시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면, 2023년 5월에 코네티컷주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모든 교도소 전화 통화를 무료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태블릿을 무료로 대여해서, 화상 통화, 전자 메시지, 영화 감상, 게임, 전자책 읽기, 음악 듣기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요금은 유료).<sup>5)</sup>

이에 앞선 2023년 3월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24년 1월에 발효 예정인 명령에서 모든 교도소 전화 회사에 청각 장애인 및 난청 수감자를 위한 비디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비디오폰을 통해 수어 또는 자막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는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이주구금시설 등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청각 장애인 수감자는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다.<sup>6)</sup>

5) California's Legislature Made Prison Phone Calls Free—Utility Regulators Can Handle the Rest. <https://prospect.org/justice/2023-05-08-california-prison-phone-calls-free/>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활동가 제공)

6) 'Prison Within a Prison': New Mandate Offers Lifeline for Deaf People in Custody <https://www.themarshallproject.org/2023/03/21/deaf-prison-fcc-video-calls>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활동가 제공)

#### 4. '단속'이라는 행정권력/국가폭력에 맞선 '환대'의 범죄화를 마주하고

결혼식 도중에, 예배당에서 기도 중에, 콘서트장에서 떼창을 하던 중에, 마트에서 장보다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일상도, 미래도, 존엄도 느닷없이 박탈당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단속에 대한 기사는 단속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를 폭로하면서도, 잡혀간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안부를 묻는 상상력은 결여되어 있다. 이주구금은 단속의 결과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국민'에게 휘둘러지는 '단속'은 최근에 경찰을 대신하여 치안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2023년부터 미등록인 상태인 비국민에 대한 단속은 공장을 벗어나 일상의 공간으로 옮겨왔다. 그러던 중 2023년 8월 출퇴근 버스를 막고 이루어진 단속 현장에서 살려 달라, 도와달라는 동료들의 호소를 듣고 도주를 도우려 했던 김\*\*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 일이 있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sup>7)</sup>

2023년 1월, 그리스에서도 에게 해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펼쳐온 활동가 24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이에 인권단체, 유럽의회는 '유럽에서 인도주의적 연대를 범죄시한 최대 사건'이라고 부르며 그리스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sup>8)</sup>

자크 데리다는 1996년, 「Derelictions of the Right of Justice('정의에 대한 법의 태만'으로 번역되어 있음)」이라는 글에서, 현실적인 입법에 각을 세웠다.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들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련 법의 개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저열한 법 집행의 한 사례로, 프랑스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사람들을 향해 1990년대 초 미국의 반(反)이민법을 모방하여 '환대의 범죄'라는 문구를 사용했던 일을 언급했다. 바로 이 '환대의 범죄'에 대한 법적인 개입을 통해 데리다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글의 일부를 쓰게 된다.

단속은 '도주의 우려'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일단 잡아들이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휘되는 단속 공무원과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재량'이라는 행정권력을 탄생시키는 핵심이기도 하다. 누구를 단속할지, 누구를 보호소에 가둘지, 누구를 보호소 '밖'으로 내보내줄지의 여부는 다름 아닌 보호소와 출입국 공무원들의 재량, 즉 어떤 순간에 전적으로 '주권자' 행세를 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이들의 판단은 법률적 '가치'를 갖는 결정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법률에 맞먹는 '힘'<sup>9)</sup>을 갖는다.

최계영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4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행정청에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0)</sup>

이러한 주장은 이주구금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즉 '출입국 통제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므로 입법과 집행의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지금까지의 암묵적 이해를 그 토대에서부터 흔드는 전복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재량'이 아닌 '의무'로서 출입국관리법의 각

7) 김규현,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둘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 통근버스 운전기사, 단속 피해 후진하다 사고 전국에서 선처요구 탄원...항소심 징역 3년→2년」 『한겨레신문』 (2024/05/01)

8) 현운영, 「그리스서 난민구조 활동가 대거 법정...'인도적 연대 범죄화」(연합뉴스,

9) 아감벤은 이러한 힘을 '법을 없는 법률의 힘'(법률의힘)이라 부른다.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항 옮김, 『예외상태』(새물결, 2009년), 79쪽.

10) 최계영, 「이주구금의 쟁점들」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21년), 66-67쪽.

조항을 검토하는 새로운 시각의 확보는 국가 주권의 행사와 신체적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며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법적 실천의 의지라고도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법적 실천 이외에 할 수 있는 실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지난한 고민과 논의의 시간이 이어져야 할 것 같다.



## 난민을 받고 싶지 않은 난민 행정

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1: 한 성소수자 난민이 있다. A 다.<sup>1</sup>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최고법원 단계까지 행정소송 절차를 전부 소진하고 자진 출국했다. 제 3 국으로 향했다. 남아서 버티며 해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는 않았다. 난민재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때 재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상식적으로 심사 주체에게 기존 심사 과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사정이 있지는 않은지 더욱 철저히 검토할 책임을 부여하는 절차여야 마땅하다. 기존 심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처음부터 재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여야 마땅하다.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신청자에게 당연히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난민업무지침은 재신청자를 절차 남용자로 본다. 단지 체류연장을 도모할 뿐이므로 심사 주체 입장에서 걸러내야만 하는 사례로 낙인찍는다.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을 했다고 간주되면 “체류허가 제한 심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받고 출국기한만을 유예받는다. 한층 밀도 높은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하게 대충 심사할 대상이 된다. 체계적인 관심을 받기보다는 성가신 처리 대상이 된다. 재신청한 난민의 체류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심사 주체가 재신청자 난민의 재신청 진의를 의심하고 심사 주체의 책임을 놓아버리는 형국이다. 우리는 좀 더 발본적으로 물을 수도 있다. 애초에 체류연장을 도모하면 왜 안 되는가? 재신청을 유발하는 기존 심사의 부실함(난민심사관과 전담공무원 수의 절대적 부족, 이들의 전문성 부족,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미흡, 심사 적체 줄이기에 치중한 졸속 행정 등)과 더불어 체류하고자 하는 바람과 필요를 불법화 범죄화 하는 국경관리의 국민주의도 우리는 심문하고 비판해야 한다. 법무부는 심지어 지난 회기 제 5 조(난민인정신청)의 2 로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 절차를 신설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재심사를 거의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을 법조문으로 아예 명시하려는 시도였다. 제 5 조의 2 에 따라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기존 제 6 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의제 3 항에 따라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와 더불어 이의신청도 못하게 하는 개악안이었다.<sup>2</sup> 국가가 재심사를 되도록이면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려 하는 정황 속에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1 심 패소 이후 항소와 상고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재신청 절차를 통해 A 가 궁극적으로 난민인정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조력자들의 공통적 판단이었다. 더군다나 재신청 이후 난민신청자 비자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마저 회수당한 상태로 취업허가도 못 받고 지내게 되면 그간에도 불안정했던 생활이 한층 위태로워질 것이 틀림없었다. A 는 난민인정을 받으리라는 보장 없이 출국기한 유예만을 단기 갱신하며 불법화되기 일보 직전의 처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지친 그는 비로소 한국에서의 희망을 꺾고 떠나기로 했다. 체계적인 재심사를 기대할

<sup>1</sup> A 의 구체적인 성소수자 정체성과 그의 난민신청 사례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A 의 허락을 받았다.

<sup>2</sup> 김연주,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관련 토론회》 (2023/6/15) <https://nancen.org/2362>.

수만 있었다면 그는 재신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것이다. 이전 심사와 소송 절차에서 답답했거나 억울했던 부분을 해소해 나가며 난민인정을 받아야만 할 사유가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세심한 재심사를 지향하는 행정이라면 기존의 심사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처음부터, 보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했겠다.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만 건수를 쳐내는 방식의 행정은 난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읽지 않고 선불리 의심해 치우고 지우기 바쁘다. 한국의 난민행정은 난민을 받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되도록 안 받기 위한 행정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2. A는 난민지위를 인정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새로운 나라에서 처음부터 다시 밟는 중이다. 그곳의 난민생활시설에서 머문지도 꽤 오래 되었다. 우리는 이 나라가 한국보다 체계화된 절차를 동원해 하루빨리 그의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가 말한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좋으니 한국에서 살고 싶다. 정든 동네와 자신을 잘 아는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는 이곳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뿌리내리고 싶어했다. 어서 남들처럼 노동해서 고정 수입을 가지고 조력자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도 자기 생활을 구성하는 날이 오기를 꿈꿨다. 성차별 인종차별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만연하고 투쟁할 일 투성이며 난민신청자 쳐우는 엉망인 이 나라 어디가 왜 좋다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곳은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에 출신국보다는 다소나마 사정이 낫기는 하였으나 그가 쏟는 애정이 무색하게 그를 거둬들여 버리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난민 행정은 그의 의식주와 건강을 방기하다시피 했고 노동시장은 체류자격마저 불안정한 그와 같은 정체성의 사람을 반기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성소수자 난민 차별을 구제해 줄 장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그가 믿는 만큼 실제로 그가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는 그에게 핵심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미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다.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이곳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싶다. 이러한 사실과 소망이 그 자체로 중요했던 게 아닌가 한다. 상대적인 안전과 더불어 수 년 간의 생활을 통해 소중해져 버리고 만 장소와 사람을 그는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한국은 끝내 그의 바람을 절단냈다. 다른 어디도 아닌 여기서 삶을 잇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외면했다. 그와 함께 살기를 포기했다. 국경 너머 새로운 무한 대기와 유예의 굴레로 그를 내몰았다. 출신국이 그를 도망치게 했다면 비호국은 그를 쫓아내고 말았다. 강제추방을 집행한 게 아니라고 쫓아내지 않은 건 아니다. 그는 떠밀리듯 떠났다. 쫓겨난 것과 다름 없다. 한국에 있는 동안 임시로 머물던 동네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머물 곳으로 이사하면서도 몇 주간 매일 산책한 공원에 손 흔들고 인사하며 눈물 짓는 정 많은 사람이다. 수 년을 살아온 동네 수 년을 살아온 나라 수 년을 본 얼굴을 떠나 너무나도 낯선 곳으로 혼자 향하는 마음이 어땠을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출국장으로 걸어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 뿐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실패다. A는 지금 한국의 실패 위를 걷고 있다. 앞서 그가 자진 출국했다고 쓰는데 위화감이 밀려왔다. 한국은 A의 사례에서 사실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A가 한국이 준 아픔을 잊었을 리 없다. 그런데도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 역시 한국이

좋다고 한다. 몇 번이고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단속을 무척 두려워 했다. 불시에 몰이 당해 체포되는 미등록 이주민을 염려하며 자기도 자칫 비슷한 처지가 될까 극도로 겁을 냈다. 그만큼 그에게는 체류자격 유지가 중요했다. “불법”이 아니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다. 그랬던 그가 “불법체류자”로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 그의 욕구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몸에 익은 장소와 자기가 직접 엮은 인간 관계의 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증한다. 법과 제도가 문제라면 내 옆의 이 사람들과 그걸 바꾸고자 같이 싸울 수 있다. 같이 화내고 움직일 수 있다.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와 같이 살지 않기로 결정한 한국 정부에 점점 더 분노하게 된다. 그가 난민인정을 받고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면 안 되었던 이유를 나는 아직도 모른다.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난민협약 가입국이자 난민법을 제정 운용하는 국가로서 이 나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태를 이해해 줘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와 우리를 이별하게 한 이 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쫓아낸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현재 그의 체류국 난민행정에도 조목조목 분통이 터지기는 마찬가지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누가 더 난민인권을 무참히 외면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면 양국 다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3. A가 한국에서 거친 난민인정절차 단계를 복기할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가 싶은 대목이 반드시 있다. 법무부는 그의 난민 사유가 난민지위 인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각급 법원도 법무부 손을 들어주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으리라는 공포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부당 대우 이상의 박해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요지였다. 제약을 감수하고 박해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박해 받을 공포도 가질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제약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박해라는 점에서 이 판단은 문제다. 난민신청자에게 박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한 논리다. 미래에 박해 받을 위험과 그러한 가능성에 느끼는 공포를 중심으로 난민사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제약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박해 받은 기존의 경험이 있어야만 미래에 대한 공포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받을까 봐 그토록 두렵다는 박해를 일단 받고 와서 신청을 해도 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숨기고 살도록 강제된 정체성을 입증하라는 건 안 숨기고 살아서 박해를 받은 증거를 내놓거나 돌아가서 숨기고 살라는 불가능한 요구다. 한국도 성소수자더러 성소수자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드러내지만 말고 조용히 살으라며 정체성 은폐를 강제하는 사회다. 그런 사회의 난민심사가 난민신청자에게 드러내고 살아서 박해받은 경험을 가져오라고 하는 데 도사린 이 모순의 심연을 처참하게 바라본다. 신빙성 판단 이슈는 그러나 그 자체로는 행정 실무적 문제는 아니다.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청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는가를 따져야 한다. A는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보조차 공식 안내가 아닌 외국인 커뮤니티 내의 입소문으로 얻었다.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면접 시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모르는 채로 혼자서 절차를 시작했다. 불인정과 이의신청을 거쳐 난민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이르러서야 공익법센터 어필과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 그가 구사하기에 가장 편한 모어를

구사하는 통역인을 구하지 못해 모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 구사자의 통역에 의지해 면접을 봤다. 부실한 통역에 기반한 면접조서의 내용은 이후 그가 할 진술의 대조용 텍스트로 기능했다. 진술 상의 디테일 불일치가 나올 때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 학대 당한 경험과 혐오 폭력에 노출된 경험에 대한 진술도 그가 입은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어 경청되지 않았다. 진술 사이 사소한 불일치만이 낱낱이 적발되어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만 함부로 취급될 따름이었다. 성소수자 난민의 경우 난민 사유와 성소수자 정체성을 한 벌로 증명해 내야 하는데, A 에게도 적용된 법무부 심사의 증거주의적 접근은 난민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의 부담을 과도하게 지움으로써,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에도 어긋나는 방향으로 면접을 구조화했다.<sup>3</sup> 심사 주체가 성소수자의 자기 진술을 당사자의 출신 문화에 기반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할 해석의 도구 자체를 안 갖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다. 사정을 이해할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이해할 의지도 없는 채로 난민신청자와 마주 앉은 공무원은 난민심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면접이라는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마는 것이다. 이후 그렇게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울 구제 절차 또한 특별히 제공되지 않는다. 여기 적은 바는 심사 과정상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4. 내가 지켜본 난민행정은 난민을 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행정이면서 난민의 시간을 틀어쥐고 숨통을 조이고 미래를 끊어내는 국가폭력에 가깝다. 난민지위 인정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분기별로 반년간으로 체류 연장을 거듭하면서 난민의 삶은 분절되고 유예된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 체류 기한은 자꾸만 돌아오고 연장 수수료는 내야 하는데 절차는 도무지 앞날의 갈피를 잡게 해주지 않는 가운데 난민 삶의 시간은 고여만 간다. 너무나 빨리 되돌아오는 명령의 시간과 도저히 흐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포개진 사이에 난민 존재의 막막한 시간이 있다.

---

<sup>3</sup>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2) 난민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A) 과도한 입증책임,”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2: 성소수자 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2020).

## 일상 공간: 평범한 일상을 가로막는 ‘벽’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 # 학력증명이 곤란함을 증명해라

- 2023년 10월에 입국한 난민신청자 아동 두명이 2024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연.
- 학력증명이 곤란한 학령기 아동(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 출신과 국적에 관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력심의위원회’라는 절차 마련됨.
- 해당 가족은 전쟁지역이 된 모국에서 사우디로 이주하여 거주하였고, 사우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으로 와서 난민신청을 함.
- 초등학교 편입학을 위해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신청서를 초등학교에 제출.
- 초등학교는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가 한달에 한번 정도 열리고, 이번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주에 열리는데, 이 아동은 단순 서류미비이기 때문에 학력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전쟁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사우디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 서류증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함.
- 결국 이름도 교육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됨.
- 아동의 학력공백과 학습권 보장 vs 서류적 완결성의 충돌
- 아동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다음주 화요일에 열리는 학력심의위원회에 아동을 포함시켜 주는 것 vs 학교가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메일이라도 증빙하지 않으면 단순서류미비이다.
- 서류 증빙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공백을 최대한 줄이자고 만든 학력심의위원회
- 학력심의위원회라는 문을 열기 위해, 서류증빙이 어렵다는 서류를 증빙해야 했던 상황.
- 근데 거기 부서가 어디시죠? “인권평화교육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계시민교육과”입니다.

### # 본인확인을 할 수 없다

- 건강보험이 미납된 난민.
- 체류연장을 할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건강보험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연체금이 있으면 체류연장 제한.
- 건강보험을 일부 납부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
- 본인확인을 위해 질문에 답을 해야 함. 살고 있는 주소, 숫자, 한국어로 명확하게 발음하지 못함. 옆에서 도와주니까, 도와주는 목소리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함.
- 결국 본인확인을 할 수 없으니 공단에 직접 방문하라고 함.
- 한국어나 영어를 할 수 없는 이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본인확인 제도.

-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겠다는 거다!

### # 테러지정국가라서 안된다

- 2017년부터 ibk 기업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개설해서 생활비로 사용해온 예맨여성.
- 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거절됨.
- 특정 국가들 테러국가로 지정되어서 본인확인이 강화되었다고 함.
-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라고 안내함. 돈의 출처가 투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함.
- 기관에서 생계비 지원하고 있으니, 돈의 출처가 기관 생계비지원금이라는 공문을 보내겠다 vs 단기지원이라 안된다.
- 신용카드도 아니고 체크카드를 만들겠다는데 왜 안되냐 vs 체크카드를 만들면 원칙적으로 해외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이분 거래내역을 보면 한국에서의 생활비로 사용해 온게 보이지 않느냐 vs 그건 확인사항이 아니다.
- 테러자금으로 해외 송금할 것이 걱정이면 해외 송금을 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면 되지 왜 체크카드를 못만들게 하느냐 vs 그건 제가 결정하는게 아니다.
- 은행측은 계속해서 atm기에 통장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하냐고 반문함.
- 최근에 현금인출 언제 하셨어요?

### #자동화된 불평등

- 버지니아 유뱅크스
-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더욱 감시하고 차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인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 난민이 아니었으면, 한국어가 서툴지 않았으면, 특정한 국가에서 오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일상의 시간들에 생기는 불편함, 분노, 좌절감을 주는 사건들.
- 나의 삶을 낭비하게 하지 말라.
- 조력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솔직한 심정.
- 시스템 뒤에 숨은 사람들. 시스템을 만들고 수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자.

## 비문해(문맹)인 난민신청과 행정권력\_이현주

난민법 제2장 5조 3항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위 조항은 문맹인, 비문해인이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 난민접수창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야함을 난민법 제정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지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난민법에서는 드물게 난민신청자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행정권력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단 두 문장으로 명시했지만 이 조항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치려면 여러 단계의 인적, 물적 준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 째로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비문해(문맹)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담당 공무원과 신청자 본인과의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입국 전담 통역인의 배석이 필수입니다. 모든 난민신청자를 한국어와 영어로만 상대하는 현행 난민신청창구의 운영방식으로는 난민신청자의 비문해(문맹) 정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난민신청자의 비문해(문맹)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는 난민신청의 가장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 비문해(문맹)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은 전문 통역인의 배석하에 난민신청서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신청인의 답변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질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난민신청서 작성단계에서의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배석한 전문 통역인의 통역품질 역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난민전문통역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국내에서 소수언어로 분류되는 아랍어의 경우, 표준아랍어를 사용하는 통역사가 특정 지역의 아랍어 방언만 구사하는 난민신청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난민면접조사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신청자의 진술을 허위로 전달하는 사례가 여전히 일어납니다. 면접조사에서도 통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문해(문맹)인의 경우, 통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면접을 마친 후, 면접조서를 발부받더라도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자력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문해(문맹)인 난민신청자 A씨는 자신의 난민신청서를 대필해준 지인과 동행하여 난민신청서를 접수하며 그 지인의 입을 통해서만 담당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의 지인은 신청인이 불러준 대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A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접수창구의 공무원이 그 지인을 통해 전달한 체류비자신청에 대한 안내도 듣지 못했지만 A씨 본인과 그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미등록체류자가 되어 버렸고 한국 입국 6년이 되어가도록 체류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가 제출했던 난민신청서에 본인이 구술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것을 면접 질문을 받으며 알게 되어 면접이 중단되었고 난민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했습니다. A씨가 문맹이라는 사실이 첫 면접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난민면접조사관을 비롯한 출입국은 비문해(문맹)인에 대한 법적 조력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미등록체류를 야기한 근본 원인을 대리인을 동행한 A씨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의 행정권력은 난민심사지침을 통하여 많은 경우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난민법이 비문해(문맹)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2장 5조 3항 마저도 출입국의 통제 일변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난민법에서 보장하는 비문해(문맹)인의 난민신청서 작성을 위한 공무원 조력은 구체적인 행정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심사지침이 난민법의 취지를 수행하는 안내서의 역할에는 소극적으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은 존재하나 그 조항을 집행할 절차조차 심사지침에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난민 행정권력의 편향성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출입국 모두가 뒤 늦게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파악하는 즉시, 출입국은 난민법에 명시된 비문해(문맹)인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마땅합니다. 난민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난민행정권력 역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며 결과해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